

#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8. 13.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8. 24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5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행정기구 명칭이 시·군간에 각각 상이하여 행정기구 명칭의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시·군간 통일된 행정기구 명칭으로 개정하고,
-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부처간 업무조정에 따라 실·과 및 읍·면간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명칭변경

· 내무과 ⇒ 자치행정과

· 내무과장 ⇒ 자치행정과장

○ 업무이관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읍·면 ⇒ 본청 (종합민원실)

°야생조수 보호 : 산림과 ⇒ 도시환경과

°농민후계자 : 농업기술센터 ⇒ 산업과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 산업과 ⇒ 농업기술센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시·군간에 각각 상이하여 통일된 행정기구 명칭으로 개정하고,
-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아울러 조례상의 명칭을 일괄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최영웅 간사)
  - °지난 제55회 임시회(98. 8. 22)에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개정할 당시, 관련조례를 개정치 않고 1년이 지난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 답변(내무과장)
  - °관련 조례를 동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그 당시 누락되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음
- 질의(최영웅 간사)
  -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합병한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 답변(내무과장)
  - °1차 구조조정때 3개과가 축소되었으나 본군은 농업이 43%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 질의(손판준 위원, 최용환 위원)
  - °농민후계자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과로 이관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맞도록 하고 농민후계자 관리를 일원화 시키지 않는 이유는?
- 답변(내무과장)
  - °농민후계자는 관내 772명이 됩니다. 이들의 기술지도, 교육, 관리 등을 산업과에서 이관함으로써 해서 읍·면에서 선정,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내용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시달에 의해 개정안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이었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없음

### 나. 수정이유 : 없음

### 다. 수정골자

- 없음

## 7. 심사결과

-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시·군간 각각 상이한 행정기구의 명칭을 통일되게 하고 부처간 업무조정예 따라 실·과 읍·면간 업무를 조정하려는 본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

## 8. 소수의견 요지

- 향후 농민후계자 관리와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관리를 일원화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8. 13.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8. 24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5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으로 일과 기능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3개년에 걸쳐 감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601명의 정원중 57명을 감축한 총정원 “544명”으로 정원조례를 개정

- 집행기관 : 533명 ( 589 ⇒ △ 56명)

- 의회사무기구 : 11명 ( 12명 ⇒ 기능직 △ 1명)

○ 연도별 감축인원은 '99년, 2000년, 2001년도에 각각 19명씩 분할하여 감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방침에 의거,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될 제2단계 구조조정은,

○ 현재 정원 601명을 57명으로 감축한 총정원 544명으로 하는 거창군 지방공무

원 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행자부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의해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조성제 위원)

°3개년 감축할 57명에 대해 일괄 인사 발령할 것인지, 그리고 5급 승진자리가 생겼을 때 감축대상자 57명 중에서 승진할 수 있는지?

○ 답변(내무과장)

°57명은 3개년에 걸쳐 매년 19명씩 인사를 발령할 계획이며 대기발령중인 자가 승진하느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시점과 승진시점 등을 검토하여 승진발령이 대기발령보다 앞일 경우에는 승진발령을 할 계획임.

○ 질의(임영선 위원)

°수도사업소의 용역결과 처리비용 과다로 정원감축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타 시·군과 연령에 비해서 어느 수준인지?

○ 답변(내무과장)

°용역결과 현재 비용 약 3억 5,000만 원보다 많은 5억 3,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현재의 비용으로 수탁할 용의가 있어 큰 문제는 없음

°수도사업소 7명과 현재 과원 5명 등, 금년도에 24명을 감축할 계획이고 수도사업소 업무가 위탁이 안 될 경우 7명을 내년도로 이월시키거나 3개년간 감축 계획임

°타 시·군 연령에 비교한다면 1차 구조조정때 하동군 45년생, 고성군 46년생, 함안군 46년생, 의령군 46년생에 비해 우리 군은 다소 낮은 실정임.

○ 질의(임영선 위원, 조성제 위원, 최용환 위원)

°현재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능력 있는 자를 퇴출시키는 것보다 근무불량자, 사생활문란자, 지탄공무원을 감축시키는 방안은?

○ 답변(내무과장)

°현재 검토중에 있으나 마지막 2001년도까지 여론을 수렴해서 기준을 삼도록 하겠음

○ 질의(최용환 위원)

°무조건 연령으로 감축함으로 인해 직급별, 직렬별 문제는 없는지?

○ 답변(내무과장)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전체 구조조정이 끝난 2001년 이후에 직렬별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

○ 질의(오임수 위원장)

°57명의 감축기준은? 그리고 감축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문제점과 57명의 감축기준은?

○ 답변(내무과장)

°감축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양보다 질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57명의 감축기준은 정부에서 감축계획을 30% 수준으로 시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본군에서는 1차에 12.4%, 2차에 9.5%로 마무리 할 계획임.

○ 질의(조성제 위원)

°구조조정으로 상당한 숫자가 감축되고 있는데 늘어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어났는지?

○ 답변(내무과장)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등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구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임.

## 5.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본군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3개년간 57명

을 감축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전체 위원 의견이었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없음

나. 수정이유 : 없음

다. 수정골자 : 없음

## 7. 심사결과

○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98년도 제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 현재 정원 601명을 57명을 감축한 총정원 544명으로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이고 능률성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다소 많은 인력이 감축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축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음.

## 8. 소수의견 요지

○ 제2차 구조조정으로 57명이 3개년 동안 감축계획이나 아직까지 공무원 수가 많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고, 무조건 연령을 기준하는 것보다 읍·면의 지탄 받는 공무원부터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8. 13.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8. 24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5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과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된 관련업무를 조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별표1”의 실·과 명칭변경

- 내무과 ⇒ 자치행정과

- 도시과 ⇒ 도시환경과

○ 읍·면에 위임된 도시환경과 업무중

“별표1”의 건축관련 2, 3, 4, 5, 6, 7, 8, 9, 10항을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사무 내용도 개정 시행함이 타당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사항 없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한 명칭 변경과 읍·면 위임사무 중 군으로 환원되는 위임사무 개정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임.

#####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없음

##### 나. 수정이유 : 없음

##### 다. 수정골자 : 없음

#### 7. 심사결과

-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읍·면에 위임되었던 사무인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다시 환원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함.

#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8. 13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8. 24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5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19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공공시설 위탁관리대상과 수익목적으로 사용시 유상사용을 명확히 함(안 제4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제2항1호 내지 제3호, 제3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 규정과 같은 내용인 공유재산 처분 재원비도 조항 삭제(안 제7조)

○ 사용허가 조건중 손해보험증서 제출조항 삭제(안 제13조제5호)

○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분명히 함(안 제14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 규정과 내용이 유사한 불용재산 처분조항 삭제(안 제16조)

-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하며 별도 장부관리 생략 (안 제17조)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대상 공유재산의 범위를 분명히 함(안 제18조의 3제6호)
- 영세민, 생보자, 철거민 등은 매각대금 분납이자를 연 8%에서 연 5%로 완화 (안 제21조제1항)
-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 매각시는 잔여 매각대금에 연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 실경작자에게 대부한 농경지와 생활보호 대상자가 적법한 주거용 건물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함(안 제22조)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는 대부료 특례적용에서 제외(안 제22조의 2)
-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대상인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안 제22조의3)
- 공유재산 신탁의 종류를 정함(안 제30조의2)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인 경우에는 10,000㎡ 이하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 도유재산인 폐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규정을 삭제(안 제38조의2제3항)
- 매각대상의 감면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 확대 및 분할납부 매각시 특약 등기 규정을 명시함(안 제38조의3)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99. 4. 30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 현행조례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하자없는 조례안임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8%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농민에게 저리로 대여해 주는 영농자금의 이자율과 같이 5%로 이자율을 낮출수는 없는가?
- 답변 :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하한선을 8%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함

#### 5.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조례안은 99. 4. 30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내용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하자없는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자치단체에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한 대부 및 매각 기준을 자율제정토록 하였고, 잡종재산 대물제도 및 신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 및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기하도록 한 데 대해,

-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안 제21조의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및 대상확대와 이자율 인하, 안 제22조의 2 대부료 특례인정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례인정 등의 조항 신설, 또는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되었으며, 안 제24조, 안 제38조의2, 안 제38조의3 등에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 현행 조례중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공시설위탁관리, 안 제7조 처분재원비도 조항 삭제, 안 제13조 보험증서제출의무 삭제, 안 제14조, 17조, 28조의 재산관리 공부 및 책임한계 명확화 등으로 보완되었고, 안 제47조, 48조, 49조에서도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잘 보완한 것으로 개정되었음
- 이와 같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내용과 현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정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8. 13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8. 24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5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군내에 공설묘지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거창군 공설묘지를 설치

○ 거창군 공설묘지는 공설공원묘지와 공설일반묘지로 구분

○ 공설묘지 내 장묘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규정

○ 장묘시설의 사용기간과 사용기간 연장, 사용권 소멸에 관한 사항 규정

○ 분묘의 설치형태 및 구조에 관한 사항 규정

○ 장묘시설의 관리운영 및 관리권 위임에 관한 사항 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국가 사회적인 문제인 묘지문제해결과 장묘문화 개선, 북상월성 공설공원묘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임
- 공설공원묘지 설치의 지역별 형평성을 위해서 읍면지역에 1개소씩 공설공원묘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공설공원묘지에는 납골묘지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
- 일반공설묘지에도 일제정비를 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 안 제2조에 장사라는 용어를 장례로 해야 맞지 않은가?
- 답변 : 상위법에 장사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에 있는 용어를 사용
- 질의 :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한은 없이 사용하는가, 기한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 답변 : 현행 규정상에 사용기한은 없음, 법에 제한사항이 없음
- 질의 : 묘지사용료와 관리비의 단위기간은?
- 답변 : 묘지사용료는 사용할 시, 관리비는 매 3년간으로 되어 있음.
- 질의 : 북상공설공원묘지는 1년 전에 완공해 놓고 왜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가?
- 답변 : 늦어서 죄송함, 묘지문제는 주민들의 민원과 이해관계가 많아 조례제정이 늦어졌음
- 질의 : 북상면민이 다른곳에 있는 묘지를 공설공원묘지로 이장을 하면 가능한가?
- 답변 : 현재로서는 가능함
- 질의 : 거창화장장의 시설보수나 신설이 되어야 장묘문화의 개선이 쉽지 않겠나?
- 답변 : 민원등이 있어 쉽지 않음, 진주나 김천의 화장장을 이용하면 큰 불편이

없음

- 질의 : 거창군내에 납골묘지를 설치한 지역과 설치한 납골묘지를 어느어느 문 중 납골묘지라고 용어를 바꾸는 것이 좋겠음
- 답변 : 남하는 완성되었고, 나머지 4개면에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음
- 질의 :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북상면민이 아니라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조례 개정때 반영했으면 좋겠음
- 답변 : 알겠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공설묘지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최근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묘지 문제를 해결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필요한 조례안인 것으로 심사하였음.
- 그러나 본 조례안 내용중 공설공원묘지의 사용기한이 없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문제점이 있어 보였으며, 안 제8조에 해당되는 생보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당해 면에 살지 않았더라도 공설공원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 북상공설공원묘지가 완공된지 1년이 넘는 지금에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음

□ 전반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북상면에 처음 설치한 공설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해 공설공원묘지가 설치된 서울경기 및 도내 타지역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적합하며, 하자 없는 조례안인 것으로 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8. 13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8. 24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5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재가노인을 낮 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탁노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탁노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입소대상자 결정 및 설치 우선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
- 시설설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정
- 탁노소 설치 및 운영지원협의회 구성과 운영근거에 관한 규정
- 탁노소 운영에 따른 직원배치 기준 임무한계 설정에 관한 규정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규정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에 관한 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노인복지시설의 수용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만드는 좋은 제도임
- 탁노소는 사회복지 시설이므로 읍·면 지역별로 1개소씩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 있음
- 협의회 인원 20명, 월 1회 협의회 개최 규정은 현실성이 없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 3천명 이상인 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형평성 없으며, 면당 1개소씩 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가?
- 답변 : 당초 도의 기준은 7천명 이상인 면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음, 예산의 형편이 되면 점진적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봄
- 질의 : 가조탁노소는 어느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답변 :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탁노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상 순서가 바뀌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함.
- 질의 : 탁노소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
- 답변 : 가조 탁노소의 경우 2천만 원이 들었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사회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중 노인복지시설의 수용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탁노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복지거창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드는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됨.
- 탁노소와 같은 사회복지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시설의 설치와 우선순위를 규정한 제2조에, 인구 3천명 미만 인 면 지역에도 탁노소 시설을 1개씩 설치하도록 하는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가조 탁노소를 이미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서야 관련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고, 잘못된 것임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음.
- 그 이외의 조례안 구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음.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년 8월 13일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6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 임차료의 상한 및 계약해지의 제한 등 임차료 관련 사항이 삭제되어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명을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

○ 농지의 임대차 관련 사항을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관련법규인 농지법 중 농지의 임대차 관련조항이 삭제(농지법 제25조)되어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 56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 내용에 학력란이 있는데, 학력을 기재해야 될 사유는?
- 답변 : 학력에 대해서는 참고 사항임.

#### 5.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관련 법규인 농지법 중 농지의 임대차 관련조항이 삭제(농지법 제25조, 농지법 제27조)되어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년 8월 13일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6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상위법인 주차장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근거법령의 일부가 삭제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 외에 따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법 제21조 제3항)

○ 조례에 법 제21조제3항을 인용한 제4조제3호 및 제9조를 개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관련 법규인 주차장법 중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명령제가 삭제(주차장법 제21조제3항)되어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 현재까지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군에서 비용을 지원해 준 예가 있는가?
- 답변 : 있음
  
- 질의 : 지원의 규모는?
- 답변 : 규모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틀림

#### 5.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관련법규인 주차장법 중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명령제가 삭제(주차장법 제21조제3항)되어 본 조례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하는 내용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년 8월 13일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6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나. 주요골자

○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 개정

○ 보건소법 ⇒ 지역보건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관련법규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현행조례의 관련조항 적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관련법규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현행조례의 관련조항 적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

○ 제출일 : 1999년 8월 13일

○ 제출자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6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거창군의 현행 수도요금에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생산원가에 접근토록 하여 상수도 시설 확충, 맑은물 공급 및 수질개선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줄여 나가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업종별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함

○ 업종별 부과단계는 현행 누진단계를 적용하고, 누진 단계별 부과금액을 새로 정함(안 제26조 별표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거창군의 수도요금에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군재정과 상수도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대전제 하에서의 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97. 3. 20 당시 내무부로부터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지침에 의하여 2000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수도요금 인상을 위하여 지난 5월 거창군 물가대책 위원회를 열어 심사 통과하는 등 상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음
- 본 조례안 심사시에는 본 안건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수도 요금의 30% 인상이 적정한 인상율인가, 인상시기는 적정한가 등에 대해 집행기관의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듣고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함께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 요금적용 규정에서는, 인상되는 수도요금의 요율을 조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 당월의 수도검침일 이후에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될 시, 인상된 요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된 것으로, 30% 인상이 적정한 인상률인가?
- 답변 : 30%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톤당 가격으로, 다른 물가하고 비교하면 수돗물 1톤이 430원이라면, 시중의 생수판매 하는 2홉짜리 1병 값과 물값이 같으므로 수돗물 값이 얼마만큼 싸느냐, 비싸느냐 얘기할 수 있음.
- 질의 : 상수도요금의 인상시기는 적정한가?
- 답변 : 당초계획 99. 7. 1부터 인상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오히려 인상 시기가 늦추어졌음.

- 질의 :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염려는 없는가?
- 답변 : 한 가정에 5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에 월 3,300원의 추가부담이 되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생활의 부담이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 상수도 검침일은 매월 언제쯤인가?
- 답변 : 매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주일 걸림
- 질의 : 본 조례 부칙의 요금적용 규정에 인상되는 수도요금의 요율을 조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당월의 수도검침일 이후에 본 조례가 공포시행될 시, 인상된 요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 답변 : 인상된 요금의 소급적용은 안 될 것임.

## 5.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조례안 심사에는 본 안건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수도 요금의 30% 인상이 적정한 인상율인가, 인상시기는

적정한가 등에 대해 집행기관의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듣고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 현행 거창군의 수도요금의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연간 7억 원의 재정적자로 군정과 상수도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로 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하였음.
- 그리고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97. 3. 20 당시 내무부의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지침에 의하여 2000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IMF등의 경제사정으로 인상을 미루어 오다, 지난 5월 거창군 물가대책 위원회를 열어 심사 통과하는 등 상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제반 절차는 이행하여 절차상의 하자도 없었음
- 그러나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 요금적용 규정에서는, 인상되는 수도요금의 요율을 조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 당월의 수도 검침일 이후에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될 시, 인상된 요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상수도 요금 30% 인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의안제출

- 제출일 : 1999년 8월 13일
- 제출자 :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1999년 8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6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하수도 사용조례를 제정운영함에 있어, 기준적용상 제정 취지를 벗어나 운용되거나, 민원발생 부작용 등의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 조례 준칙에 맞게 전면 개정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공공하수도 처리 및 배수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사용개시 공고를 하도록 하고,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설치된 지역은 관거유지 관리비만 사용료로 징수토록 규정함(안 제10조)
-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행대비 30% 인상하고, 상수도 사용료징수 업종체계로 통일함(안 제10조 별표2, 별표3)

-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의한 양을 담당공무원의 실배출량 확인에 의한 양으로 인정토록 개정하여 실배출량에 의한 사용료 징수가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 1일 일정량(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계측기를 설치토록 함  
설치 후 봉인하고 계측기의 설치장소 및 관리방법을 정함(안 제12조)
- 계측기의 고장시 사용료 인정 부과 방법을 정함(안 제13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산정기준 징수시기를 구체화 함(안 제15조, 별표4)
- 사용료 납입의무 승계조항을 폐지함(안 제20조)
- 과태료 처분기준은 하수도법을 준용하고 조례에서는 삭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조례준칙에 의거 현행조례 중 민원발생 요인이 있거나 당초 하수도 사용조례의 제정취지를 벗어난 조항을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상수도 요금 징수업종 체계로 통일하며, 하수도 사용요금을 30%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조례개정의 취지나 형식에는 하자가 없음.
- 본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하수도 사용요금의 업종체계를 상수도 업종과 통일할 시, 사용자들의 손익 여부와, 요금 30% 인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 이 조례 부칙에 규정한 인상되는 요금 적용도 상수도 요금인상과 마찬가지로 조례 공포일에 따라 요금적용이 소급될 수 있으므로 심사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 이외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내용은 하수도를 원활히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항 개정으로서, 그 형식 요건이나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준칙 부칙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8. 6. 30까지 개정하도록 명시했는데 본 개정 조례안을 늦게 제출한 사유는?
- 답변 : 잘못 챙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함.
- 질의 :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중 주민의견 수렴 내용은 무엇인가?
- 답변 : 신문 발표 외에는 없음.
- 질의 : 하수도 요금 30% 인상률이 적정한가?
- 답변 : 현 톤당 65원이 85원으로 30% 인상되면, 톤당 20원 오른 부과임. 가정에서 30톤 쓴다고 할 때 600원 인상이 됨. 적정하다고 생각됨.
- 질의 : 본 조례 공포일에 따라 요금 적용이 소급될 수 있으므로, 요금적용에 대해서 설명 바람.
- 답변 : 상수도 요금과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 5.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조례준칙에 의거 현행조례 중 민원발생 요인이 있거나 당초 하수도 사용조례의 제정취지를 벗어난 조항을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상수도 요금 징수업종 체계로 통일하며, 하수도 사용요금을 30% 인상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서, 조례개정의 취지나 형식에는 하자가 없었음.
- 본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하수도 사용요금의 업종체계를 상수도 업종과 통일할 시 사용자들의 손익 여부와, 요금 30% 인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음
- 그러나 이 조례 부칙에 규정한 인상되는 요금 적용도 상수도 요금인상과 마찬가지로 조례 공포일에 따라 요금적용이 소급될 수 있으므로 조례시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음.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8. 17.

○ 제출자 : 조성제 의원 외 5인(의원발의)

나. 회부일자 : 1999. 8. 24

다. 상정일자 : 제62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 8. 25 상정의결)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  
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 따라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인에게 입찰소요경비를 부담하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1건당 10,000원의 수  
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38회 임시회('96. 6. 17) 개정되었으나

○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도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제  
공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 경우에도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내용을 신설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제1조(목적) 중 입찰참가를 “입찰참가신청”으로 하고 다음에 “수의계약자”를

삽입한다.

- 제5조(징수방법) 중 입찰참가신청서 다음에 “수의계약자”를 삽입한다.
-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별표1) 9-1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①호 다음에 ②호 “수의계약자(1,000만 원 이상) 1건 10,000원”을 신설한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제 의원 외 5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본 개정안은,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28조, 제130조의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제반업무도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으로 보아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안으로,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98. 9. 8, 원고 강원도지사, 피고 횡성군의회) 따라 이를 개정 시행함에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사항은 없었음

### 5.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고, 이미 강원도와 횡성군의회와의 대법원 판례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옳다는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

#### 나. 반대토론

- 없었음.

## 6. 수정안 요지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없음.
- 나. 수정이유 : 없음
- 다. 수정골자 : 없음

## 7. 심사결과

-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제 의원 외 5인의 연서로 발의되고,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28조, 제130조의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 이미 지난 96. 6. 17 제3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입찰참가자에 대한 1건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개정안이 시행중에 있고,
- 또한 입찰참가자 외 수의계약에 따른 제반업무도 특정인을 위한 역무제공으로 수수료 징수는 합당하다는 지난 98. 9. 8. 강원도지사와 횡성군의회와의 대법원 승소 판결이 있어 법 적용상의 하자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을 거친 결과, 조성제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되었음.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1999. 8. 13.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9. 8. 24

다. 상정일자 : 제6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9. 8. 30 의결)

### 2. 추경예산안 현황

가. 세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세 입 합 계	106,473,761	106,488,183	2,255,578	2.1
지 방 세	7,633,759	7,633,759	0	0.0
세 외 수 입	19,832,457	17,576,924	2,255,533	12.8
경상적세외수입	7,206,957	7,140,457	66,500	0.9
임시적세외수입	12,625,500	10,436,467	2,189,033	21.0
지방교부세	36,920,000	36,920,000	0	0.0
지방양여금	13,631,127	13,631,127	0	0.0
조정교부금	0	0	0	0.0
보 조 금	29,266,418	29,266,373	45	0.0
국고보조금	20,523,019	20,523,019	0	0.0
시·도비보조금	8,743,399	8,743,354	45	0.0
지 방 채	1,460,000	1,460,000	0	0.0
국내차입금	1,460,000	1,460,000	0	0.0
국외차입금	0	0	0	0.0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	0	0	0	0.0

나. 세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비 고
세 출 합 계	106,473,761	106,488,183	2,255,578	2.1
경 상 예 산	28,040,179	28,036,529	3,650	0.0
인 건 비	14,880,910	14,880,910	0	0.0
경 상 적 경 비	13,159,269	13,155,619	3,650	0.0
사 업 예 산	72,171,468	71,952,798	218,670	0.3
국고보조사업	30,256,013	30,256,013	0	0.0
지방양여금사업	14,987,470	14,987,470	0	0.0
시.도비보조사업	10,049,698	10,049,653	45	0.0
자 체 사 업	16,878,287	16,659,662	218,625	1.3
채 무 상 환	6,434,416	4,591,226	1,843,190	40.1
지 방 채 상 환	6,434,416	4,591,226	1,843,190	40.1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0.0
예 비 비 등	2,097,698	1,907,630	190,068	10.0
예 비 비	2,092,023	1,901,955	190,068	10.0
기 타	5,675	5,675	0	0.0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99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 금번에 요구된 예산은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삭감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과 크고 작은 군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 충효회관 보수사업비, 군정공고료, 공동방제 마스크 공급비 등은 '99년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항목이 재요구 되었고
- 어버이날 행사비 부족분과 도계조경 사업비 등은 이미 승인된 예산범위를 초과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증액 요구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장으로부터 충분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심사되어야 할 것임.

#### 4.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99. 8. 30
- 제안자 : 예결위원 전원

나. 수정이유

-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당초 승인된 예산보다 초과 집행하고 추가 증액 요구된 예산은 삭감.

다. 수정골자

- 별첨 삭감조서 내용과 같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금회에 상정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819억 4,322만 원에서 148억 329만 6,000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당초 99억 6,666만 1,000원에서 20억 3,058만 4,000원이 늘어나 예산 총규모는 1,087억 4,37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8억 3,388만 원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심사를 하였던 바,
- 금년도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으로 국·도비 지원이 당초 보조내시보다 감소되어 군비의 부담이 늘어나 군민의 숙원사업 해소에 큰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정주환 군수님께서는 도와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국·도비 활동에 노력한 결과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 등 20건에 69억 원의 국·도비를 유치 또는 지원 받게 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기존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집행부의 설명부족

과 사전보고와 동의 없이 이미 사업을 마무리하고 부족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극히 일부인 일반회계에서만 6건에 4천4백6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그 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은 수정 없이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